

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11. 21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11. 21.
- 라. 의안번호 : 2005 ~ 65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04. 7. 30. 대통령령 제18504호)됨에 따라,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설치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함(안 제1안 및 제2안)
- 세입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,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함(안 제3조)
-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함(안 제4조)
- 이월금 및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(안 제5조)
- 금고설치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토록 함(안 제6조)
-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관리토록 함(안 제7조)
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준용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세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규정하고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정한사업의 사업비 등으로 정하였으며, 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 및 집행 잔액을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성 있고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검토되었음.
-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수정안 요지 : “해당없음”

7. 심사 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8. 소수의견 요지 : “생략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